

의안번호	제240호
------	-------

발의연월일

2024. 1. 3.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길원 의원 외 2인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40호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3일
발의자 :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3인)

1. 제안이유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예산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다. 강사 위촉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라.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4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6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1.4. ~ 1.11.[8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예산군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장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강사 위촉) 군 지방보조사업자는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위한 강사 위촉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군수는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1. “체육”이란 운동경기 ·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 · 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 · 직장 ·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다. 「태권도 진홍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홍재단
 - 라. 「전통무예진홍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 마. 「스포츠산업 진홍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협회
 -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삭제 <2021. 8. 10.>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법률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0. 8. 5.]

□ **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제18251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삭제 <2021. 6. 15.>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임 2】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 지원사업 및 보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예상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이길원 의원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예산107			
정책명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조성호	전화번호	041-339-707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2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